

[사]한국양봉협회 선거관리규정

(제15대 임원 · 지회장 선거)

■ 목적/관련근거

- 한국양봉협회임원(지회장)선거관리규정에 의거 2005.11.25일 임원 · 지회장 연설회의에서 선거 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조기 발동 결정.
- 금번 15대 임원 및 지회장 선출 선거와 관련하여 부정선거 방지 및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의됨.
- 본 계획은 15대 임원 및 지회장선거에 규정/적용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사)한국양봉협회의 선거가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양봉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원 및 지회장선거에 관하여 협회 정관 및 임원(지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해 적용한다.

제3조(선거인)

1.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확정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

거권자만이 선거인이 될 수 있으며, 정관 제4장 (총회)에 의거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대의원은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회원에게 위임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그 대리인은 미리 발급 한 위임장과 개인인감증명서를 총회 1일전 17:00까지 선거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대리권을 인정 받아야 한다.

2. 위원회는 등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는 이사회에서 승인(인준)된 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재 사항 중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선거 3일전 까지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4.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5.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즉시 심의하여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의 자격제한

- 협회 선거관리규정 제9조 적용)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가. 미성년자
 - 나.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 피산자, 또는 공민권이 박탈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라. 정관 제5조의 특별회원
 - 마. 관련양봉단체의 임직원
 - 바. 임원은 협회 가입일로부터 7년 미만인자
 - 사. 지회장은 협회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자

제 2 장 선거관리 위원

제5조(위원회의 설치)

1.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기간은 선거 종료 시 까지 하고, 운영사무실은 협회 사무국에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2인, 위원은 각 시·도 지회별 1인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4. 위원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한 후 비치한다.

제6조(위원회 직무)

1. 후보자등록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명부 확정

3.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4.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5.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6.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7.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8. 당선인의 확정
9. 선거인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10.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에 관한 사항
11.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12. 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규정을 근거로 후보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선거운동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후보자로 하여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한다.

제7조(선거·투표·개표관리자)

1. 위원회는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거 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를 선출할 수 있다.
2. 선관위 간사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선거·투표 및 개표 상황을 기록한 선거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다.

제 3 장 선 거 절 차

제8조(후보자 등록신청)

1.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추천인원: 회장20명, 부회장15명, 이사10명, 감사10명) 중 선거권자 추천서를 기록하여 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후보자 추천서는 대의원 1인이 동일 직 후보자 1인에게만 효력을 가진다.



3. 후보자의 등록은 마감일 2006년1월10일 17시까지로 한다.
4. 후보자로 등록 신청하는 자는 협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기 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다음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인의 의사 를 확인하고 접수 할 수 있다.

가. 후보자 제출서류

- 1) 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2호 서식)1부.
- 2) 자필 이력서1부
(사진부착 3×4증명사진 2매)
- 3) 학력증명서1부
- 4) 신원조회 확인서 1부.
- 5) 개인 인감증명서 1부
- 6) 주민등록 등본 1부.
- 7) 병역복무 확인서 1부.

6. 등록심사 접수

가.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신청서류 및 기재 사항 등을 확인하여 하자가 없을 경우 후보자 등록부에 기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나.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즉시 후보자 전원에게 대하여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 없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후보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취소하여야 한다.

7. 후보자 공고

가.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 에 후보자 등록사항을 협회사무국,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

8. 등록취소

- 가.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사고 등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인의 의사 를 확인하고 접수한다.
- 나. 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자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선 거 운 동

제9조 (후보자 기호결정)

1.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후 후보자 간의 추첨에 의하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추첨시기 2006.1.10일 17:30 추첨/한국양봉협회 사무국)
2. 위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호는 “1. 2. 3...”으로 한다.

제10조(선거공보/홍보물)

1. 위원회에서 규정한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1회에 한하여 선거일 5일 전 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2. 선거공보에는 투표일시 및 장소 등 선거실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3. 후보자 홍보물은 후보자의 기호, 사진 (3×4), 성명, 생년월일, 경력, 학력, 병역복무확인서 등을 게재하여 선거 5일전까지 발송한다.
4. 후보자는 위원회에서 정하지 않는 유인물 홍보물을 일체 보낼 수 없다.
가. 어깨띠, 신문광고, 인쇄물 관련 매체 광고 등을 하지 못한다.



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합동 토론회)

1. 위원회는 합동토론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선거전에 개최할 수 있다.
2. 합동토론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2006년 1월20일 총회 장소에서 개최 되며 토론회시간은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3. 합동토론회 개최 전 후보자는 상대 후보자에게 질의내용(후보자별 5건)을 사전 기재하여 토론회 직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위원장이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후보자의 답변시간은 3분 이내로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4. 위 11조 3항에 의거 토론회에 참가한 대의원을 대상으로 서면질의 내용을 받아 2건을 추첨하여 후보자에게 각각 질의 한다.(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 시행 한다)
5. 각 후보자는 합동토론회를 제외하고는 연설할 수 없다.

제12조(선관위비용의 처리)

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비용은 후보자 기탁금에서 사용할 수 있고, 선거 종료 후 정산 처리한다.

제 5 장 투 표

제13조(투표소)

1. 투표소는 총회의 개최 장소에 설치한다.
2. 투표소의 기표소는 타인이 기표내용을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투표용지)

1.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인쇄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관인이 있어야 한다.

2. 전항의 기호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며,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명기한다.

제15조(투표 · 개표의 참관)

1. 위원회는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참관인 각각 2인을 대의원 중에서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단 회장후보만 참관인을 둔다)
2. 다만, 신고가 없을 때에는 후보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임시의장의 선출)

1. 총회의 의장이 후보자인 경우에는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 의장을 선출 한다.
2. 임시의장은 선거관리 위원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임원기표요령)

1. 임원선거에 참가하는 투표에 참가하는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요령으로 기표한다.

- 가. 회장 : 1표
- 나. 부회장 : 2표이내
- 다. 이사 : 5표이내
- 라. 감사 : 2표이내

제18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투표소 및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입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투표)

1. 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2. 선거인이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 관리자는 선거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 면허증)와 선거인명부에 의하여 그 자격을 확인한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도장)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3. 위 2항의 내용에 의거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4. 선거인은 기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도구로 투표용지에 “○”표 시를 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 6 장 개 표

제20조(개표)

1. 개표는 투표완료 즉시 투표 장소에서 실시한다.
2. 위원은 개표결과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선거록을 작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이에 서명 날인한다.
3. 위원장은 선거록에 의하여 선거결과를 즉시 공포하고 당선을 선포 한다.
4. 임원(회장) 당선결정은 최다득표로 한다, 단 부회장(2명), 이사(5명), 감사(2명)는 다 득표순으로 결정한다.
5. 개표결과 동점일 경우 연장자가 선임 된다.
6. 개표가 끝난 투표지는 유효,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 투표지는 다시 후보자 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회가 봉인한다.

제21조(선거의 무효/투표무효)

1. 선거에 있어서 총 투표자수가 선거인 명부의 날인자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선거는 무효로 한다. 다만, 초과된 투표수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가 무효로 된 때에는 즉 시재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가.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나.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다. 2개소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 라. 어느 난에 표를 하였는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4. 소정의 기표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5. 문자, 물형 등을 기입한 것.
- 6. 난 외에 기표한 것
- 7. 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규칙에 따라 무효표로 처리 할 수 있다.

제22조(재선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 한다.
- 가.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사망 한 때
 - 나. 선거의 무효판결이 있는 때

제23조(취임승낙) 선출된 임원은 취임승낙서를 협회에 제출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24조(기록보존) 선거록과 위원회의 의사록 및 투표지는 당해 선거에 의한 협회장 재임기간(소송이 법원에 계류하는 기간동안) 협회 사무국에서 보관 한다.

제 7 장 선 거 인 명 부

- 제25조(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임원, 지회(신·구)장/사무국장(신), 분회장/대의원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재 사항의 결정 및 이에 대한 사항을 감독 한다.

1. 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은 소속지회/분회,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소로 결정한다.
2.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협회 사무실에 비치하여 자유롭게 열람 또는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는 선거 3일 전 24시까지 확정하며 당해 선거에 한 해 효력을 가진다.

제 8 장 공정선거의 의무

각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공정한 선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서약서를 제출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정 제20조5항의 당선결정은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규정한 규정을 준수 한다.
2. 타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흑색선전 등을 하지 않는다.
3. 금품제공, 향응, 기부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4. 이권과 관련한 공여제공 등의 약속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약속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업체수의계약과 관련한 약속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선거후 당, 낙에 불구하고 협회와 협회원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8. 선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민, 형사상의 이의 및 소송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제 9 장 불법선거/고발조치사항

본 내용은 한국양봉협회 임원(지회장)선거관리규정에 의거 2005.11.25일 (대전유성구 대온장) 임원·지회장 연설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조기구성 (위원장 선임 후 비상대책회의)하고, 금번 15대 임원 및 지회장 선출 선거에 부정선거방지 및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하여 금품, 향음제공자의 신고가 접수(확인)되었을 때는 임원, 지회장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고발조치하기로 결의 된 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안(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이사회 및 선관위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 되었음.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 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다. 후보자 추천서를 받는 행위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가. 선거권이 없는 자.
 - 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불법선거운동으로 본다.
 - 가. 등록 후 집회, 연설회 선거운동 할 수 없다.
 - 나.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의 집이나 사무실을 찾아가 선거 운동을 하였을 때.
4. 2005년11월25(선관위 비상대책위원회)이후 발생한 금품 및 향음제공이 적발 되었을 때에도 법적조치하고 후보자 등록 취소 및 당선 무효가 된다.

